

**피해자 주의 사항: 첨부된 범죄 피해자 통지 요청 및 권리 요구 양식에 대한 지침을 검토하세요.
정보 및 권리에 대한 가장 중요한 연결 고리입니다.**

양식 작성 지침

1. 첨부된 양식을 작성하여 주 검찰청에 제출하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청문회 및 이벤트에 대한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양식을 반환하면 재판, 선고, 항소, 수감, 감독 및 재판 후 석방 절차 전반에 걸쳐 피고인/청소년에 대한 정보가 제공됩니다.
석방 통지에는 시험판 미결 석방에 대한 통지가 포함될 수 없습니다. 귀하는 또한 범죄의 피해자로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권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권리 행사에 대한 개인적 지원을 받으려면 사건과 관련된 주 검찰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양식을 작성하기 전에 아래 지침을 읽으십시오.
2. 범죄 피해자로서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통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이 양식에 서명하고 사건을 처리하는 주 검찰청에 흰색, 노란색, 분홍색, 녹색 및 파란색 사본을 반환하십시오.
나중에 참조할 수 있도록 골든로드 카피를 보관하십시오.
3. 귀하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즉시 이 양식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양식에 서명하고 반환하지 않아도 나중에 사건을 처리하는 주 검찰청에서 법원 사건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성한 양식을 즉시 주 검찰청에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서명 및 반납 여부와 관계없이 사건 증인으로 요청된 수 있으므로

주 검찰청의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귀하는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가 법원 사건과 관련된 통지를 받을 개인 또는 조직을 지정하더라도 사건을 처리하는 주 검찰청이 귀하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습니다.

5. 주소나 전화번호를 변경하는 경우 주 검찰청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무부에서 통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가해자가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수감 중이거나, 집행 유예 또는 가석방 중이거나, 유죄 판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경우, 주소 또는 전화번호의 변경을 약정 시설, 가석방 및 보호관찰 부서 또는 법무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6. 언제든지 사건에 대한 통지를 중단하거나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더 이상 행사하고 싶지 않은 경우, 서면으로 요청을 작성하여 주 검사 또는 피고인/청소년이 투옥된 경우 수감 명령에 명시된 시설에 보내야 합니다.
7. **명심할 사항:** 귀하가 사건에 대한 통지를 받을 다른 사람 및/또는 조직을 지정한 경우,
연락처 또는 조직과 계속 연락하는 것은 귀하의 책임입니다.
귀하의 대리인이 이동하거나 다른 방법으로는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귀하가 대리인에게 통지하지 않고 이동하는 경우, 법률에 따라 귀하가 자격이 있는 사건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 알림 요청 및 권리 요구 양식

양식은 피고 및/또는 청소년 각각에 대해 작성해야 합니다.

순회/소년 법원에서		카운티/시 (한 개에 동그라미)
법원 사건 번호	케이스 추적 번호 (알고 있는 경우)	수감자 번호 (알고 있는 경우)
주 v.	생년월일 _____/_____/_____	

범죄 피해자 알림 요청 및 권리 요구 양식 (확실하게 모든 정보를 인쇄하거나 입력하십시오)

피해자 이름: Ms. / Miss / Mrs. / Mr. (Circle one)	미성년자의 경우, 생년월일 _____/_____/_____
피해자가 미성년자, 고인 또는 장애인인 경우 피해자 대리인 이름을 적으십시오. Ms. / Miss / Mrs. / Mr. (Circle one)	관계

본인은 법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및 피고인/청소년과 관련된 모든 사건에 대한 통지를 요청하며,
범죄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모든 권리를 요구합니다.
본인은 이 양식을 작성하지 않고 주 검찰청에 돌려보낼 경우 피해자로서 본인 권리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또는 피해자 대리인의 서명

날짜

구체적인 지침과 정보는 이 양식의 앞면에 첨부된 지침 페이지를 참조합니다.

이 양식은 이 사건에서 공공기록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귀하가 기록에 주소 및 전화번호를 추가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
☐ 이 확인란을 선택하여 이 정보에 대한 차폐를 요청합니다.

피해자/피해자 대리인:			
주소	도시	주	우편번호
전화 (주간)	전화 (야간)	휴대 전화	
이메일			

다른 사람 또는 조직이 귀하에게 통지를 받고 전달하는 데 동의하고 귀하가 대체 직원과의 연락을
유지하는 데 동의하는 경우 다음 정보를 작성하십시오.

대체 피해자 연락처 이름:			
피해자/피해자 대리인 관계: ☐ 가족 ☐ 친구 ☐ 지원 기관 ☐ 기타			
연락처 주소	도시	주	우편번호

전화 (주간)	전화 (야간)	휴대 전화
---------	---------	-------

이메일

형사 사법 기관은 이 양식의 뒷면에서 처리 지침을 참조합니다.

백색: 법원 서기; 노란색: 주 변호사; 분홍색: 구금/DOC/DHMH; 녹색: 가석방 및 보호관찰; 파란색: 법무부, 골든로드 :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

기관 처리 지침

범죄 피해자 알림 요청 및 권리 요구 양식

1. 주 검찰청: 정보 또는 고소장을 제출한 후 10일 이내에 범죄 피해자 통지 요청 및 권리 요구 양식(CVNRF)을 피해자 또는 피해자 대리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형사 소송법 § 11-104(c)조 참조). 작성된 CVNRF를 수령하면 주 검찰청은 영수증을 기록하고, 노란색 사본을 유지하고, 흰색, 분홍색, 녹색 및 파란색 사본을 순환 서기 및/또는 소년 법원에 전달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 11-104(d) (2) 참조). 피고가 재판에 계류 중인 경우, CVNRF의 복사본(가급적 분홍색)은 피고가 수감된 구치소로 즉시 보내져야 합니다. 피고가 유죄 판결을 받고 법원 사건이 종결된 후에도 CVNRF가 접수되는 경우, 흰색, 분홍색, 녹색 및 파란색 사본은 여전히 사무실에 전달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흰색 사본을 보관해야 하며, 해당되는 경우 즉시 분홍색 사본을 약정 시설에, 녹색 사본을 가석방 및 보호관찰부에 전달해야 합니다.

2. 특별 항소 법원 또는 항소 법원에 항소하는 경우, CVNRF 사본은 대검찰청으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메릴랜드 형사소송법 § 11-104(f)(2) 주석법 참조).

3. 순회 법원 서기: 주 검찰청으로부터 받은 모든 사본은 사건이 심리되고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기록되고 법정 사건 파일에 저장되어야 한다. 피고가 교정부, Patuxent 기관, 메릴랜드 보건부 또는 현지 구치소에 수감되는 경우 분홍색 사본을 수감 명령에 포함해야 합니다. 보호관찰명령이 발부된 경우, 녹색 사본을 보호 관할 명령에 첨부하여 보호 관할 선고가 시작되기 전에 지정된 보호 관할관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 11-104(f) (1) 참조). 피고가 유죄 판결을 받고 법원 사건이 종결된 후 CVNRF가 접수되는 경우, 흰색(원본) 양식을 기록하고 법원 사건 파일에 보관해야 하며, 해당되는 경우 분홍색 사본은 수감 시설에 전달되고 녹색 사본은 가석방 및 보호 관할부 내의 지정된 입소 담당자 또는 보호관찰 대리인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 11-104 (f) 참조).

4. 상소가 제기된 경우, 서기는 파란 사본을 법무부장관에게 보내고, 사본을 상소한 법원에 보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 11-104(f) (2) 참조).

4. 소년 법원 서기: 주 검찰청으로부터 받은 모든 사본은 사건이 판결될 때까지 기록되고 법정 사건 파일에

보관되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수감된 경우, 서기는 수감 명령에 분홍색 사본을 포함시킬 책임이 있으며, 보호관찰 중에 있는 경우 녹색 사본을 보호관찰 명령에 첨부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 11-104(f) 참조).

5. 지역 구금 시설: CVNRF 또는 기타 서면 요청을 받은 경우, 현지 구치소는 통지를 위한 요청의 수령을 기록해야 합니다. 일단 수신되면, 수감 유닛은 수감자의 탈출, 재포획, 이송, 석방 또는 사망을 피해자, 피해자의 대리인, 또는 목격자에게 통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 11-508 참조). 수감자가 이후 교정부, 메릴랜드 보건부 또는 Patuxent 기관에 수감되는 경우 CVNRF 또는 기타 서면 요청을 수감 명령과 함께 전달해야 합니다.

6. 교정 부서: CVNRF를 수령하면, 교정부는 영수증을 기록하고, 분홍색 사본을 보관하며, 해당되는 경우, 복사본을 가석방 위원회에 전달해야 합니다. (Paul Davis, 전 메릴랜드 가석방 위원회 위원장 및 Debra Neighoff, 피해자 서비스 코디네이터, 1993년 교정 부서 간의 구두 합의에 의해).

7. 참고: 본 가이드라인은 범죄 피해자 통지 요구서(Demand for Rights Form)의 처리 및 기타 서면 요청만을 다루며, 법원 및/또는 위탁 상태에 대한 통지에 대한 기관의 책임은 없습니다. 범죄 피해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개별 기관의 법적 의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메릴랜드주 형사소송법 제11조 주석법을참조합니다.

8. 이러한 절차를 따르면 형사 사법 전문가들이 겪는 혼란을 없애고, 범죄 피해자의 법적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을 줄이며, 주 전역에서 피해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개정: 2018년 2월